

[성남 하대원 모듈러]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인주자모집공고일 2020, 07, 10]

1. 요약

구분	건설위치		건물층수	난방방식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	14호	3층	개별난방

■ **입주자격**(일부내용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 **본문의 세부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압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দাপ্ত শাত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만19세~만39세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청년 계층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고령자 계층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절차 (선계약 → 입주자격 검증 후 입주)

[현장 접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번지, 1층 공동휴게실]



- 본 공급은 현장에서 접수(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합니다.
- 본문의 세부 자격기준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서류 및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 후 방문하셔 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은 무주택자)을 대상으로 모집 및 계약합니다.
-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u>적격자인 경우만 계약은 유효</u>하고 입주가 가능하며 또한, <u>검증완료된 공급</u>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전 변경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u>계약금만을 반환하면</u>(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 <u>계약은 해제</u> 됩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경우의 계약 해지(단순변심 등)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추가모집공고일 기준이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입니다. (모집공고일 다음달부터의 판단기준일은 매월 1일기준)
- 입주자격 조사(심사)는 계약(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됩니다.
- 모집대상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주택으로 입주자격 조사완료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적격자 안내일로 부터 입주지정기간(30일)이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로 확정된 분은 입주 후 주소지를 반드시 해당 소재로 주소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번호 또는 주소가 신청서와 달리 변동된 분은 정정을 하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은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 게 됩니다.
- 경기행복주택은 시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장소 등
모집 공고	2020.07.10(금요일)	·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u>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u>
선착순 계약체결 (예비자 선착순 신청 접수)	<mark>2020.7.21.(화)</mark> ~ <mark>2020.08.14.(금)</mark> ※ 공급완료시 종료	 ·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 1층 공동휴게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번지 ※ 문의번호: 02-6910-7192 (계약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계약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당일완료] (예비자접수방법) ① 신청서 선착순 팩스전송(FAX: 031-234-8505) ② 팩스접수 순서대로 예비자 선정(방문신청불가)(선착순 선정 예정) ※ 유의사항 . 신청자 대상 순으로 계약(접수)을 선착순 진행함 . 예비입주자 신청자는 공가세대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입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자격 심사 서류접수 마감 (계약자, 예비자 모두 제출)	계약일(또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계약(신청)시 제출가능	· 우편제출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에뜨 1층 상 가 임대관리팀 사무실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문의번호 : 02-6910-7192 ※ 현장접수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번지)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무주택.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조사	약 3개월 소요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부적격자 소명	별도안내	※ 적격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시,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며, 소명기간 내 소명 않을시 별도 안내없이 접수 취소됨.
입주안내	별도안내	※ 신청시 제출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수신 동의자)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및 조건

		모집호수			계약면적 (m²)			임대	ዘ조건		전	년환시(최대 <i>)</i>	/최소)											
공급	공급			주거	주거	기타			임디	배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임대조건	4	난방								
유형	대상	입주	예비	전용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원)	증감	보증금	임대료	방식								
									*11	(계약시)	(입주시)	(2)	구분	(천원)	(원)									
18	대학생	1	2						19,380	1,000	18,380	111,000	(+)	28,380	66,000									
10	4170	'	٦																		111,000	(-)	10,380	141,000
	청년계층			17.92					20,520	1,000	19,520	110,000	(+)	30,520	68,000									
10	(소득 有)	-	1		17.92	17.92	17.92	11.00	2.02		22.4	20,525	<u>.,,,,,,,,,,,,,,,,,,,,,,,,,,,,,,,,,,,,</u>	. 5,525	118,000	(-)	10,520	151,330	711111111111					
18	청년계층		1 1 					17.92	11.08	2.82	-	32.4	19,380	1,000	18,380	444.000	(+)	28,380	66,000	개별난방				
	청년계층 (소득 無)										13,300	1,000	10,300	111,000	(-)	10,380	141,000							
10	그려지												20,900	1,000	19,900	120,000	(+)	30,900	70,000					
18	고령자	-	I						20,500	1,000	13,300	120,000	(-)	10,900	153,330									

- 공급신청은 공급단지별, 공급유형별, 공급대상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입주자는 제외)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회 모집시 공고한 조건(입주자격, 임대조건, 입주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신청 가능한 유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u>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됨</u>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급대상과 신청자격(계층,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 유/무에 따라 계약시(변경계약, 재계약포함) 다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해지 및 공가주택에 대한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입주대상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 포함)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 예비자 수만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공급형별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공가세대 발생시 접수순서(또는 당첨순서).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순으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선계약 후 입주자격 조사.심사를 거쳐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은 공가세대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지정.선택 하며, 계약은 확정된 입주자 격에 따른 임대조건 변경 또는 부적격시 해지(해제)를 조건으로 선계약 합니다.
- 금회 임대대상은 준공된 지구로서, 공급대상(계층)을 변경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집대상도 동호의 배정 결과에 따라 <u>공급대상(계층)과 다른 주택유형으로 설계 및 시공되있는 주택일수 있고, 현시설(또는 현계획시설) 상태로 공급되니 계약전 반드시 세부 평면과 시설의 설치현황을 확인</u> (방문하여 세부 도면 등의 열람이 가능함)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각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6년, 고령자 2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도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도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상주차장, 공동휴게실이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입주시점 등 공사가 지정하는 일정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는 이율 6%를 적용하고,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는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정확한 입주시기는 신청 차수 및 자격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해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및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 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 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성남하대원모듈러

4-1.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u>무주택자</u>로서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대학생은 ①-ଡ)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৬와 ②~ ④)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 이하
2인	4,379,809 이하
3인	5,626,897 이하
4인	6,226,342 이하
5인	6,938,354 이하
6°I	7,594,083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마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선착순

성남하대원 모듈러 4-2. 청년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 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신청자	기구전구	해당세대(100%)	본인(80%)			
그 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1인	-	2,116,118원 이하			
HEIOL OH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세대원 있는 세대주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 \-\ \ - \ \-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본인은 524,58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자'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⑭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①신청자 본인
 -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선착순

성남하대원 모듈러 4-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2,645,147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선착순

5. 신청 및 선정방법 등 안내

■ 신청절차

[현장 접수: 현장 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 1층 공동휴게실]



-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계약 합니다.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당일 공급신청 접수대장에 등록 서명하신 후 등록순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므로(예비 입주자는 등록순으로 선정) 본 모집 공고문의 입주자격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서류 및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접수와 동시에 <u>지체없이 동호 (예비자의 경우, 공급유형)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더라도</u> <u>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u>
- 동호지정 당일 계약 마감시간(16시) 전 까지 지정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익일에 재공급 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없이 100만원 이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인 경우 입주가 가능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없습니다.

■ 기타 공통 안내사항

-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함
- ※ 부적격자의 소명요청은 신청서(또는 계약서)의 주소로 요청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 o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o 준비서류는 아래 "7.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6.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8.12.19)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니며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모든 서류는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부수
신청서 (붙임 서식)	. 신청자 작성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mark>정자 서명 또는 날인</mark>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자본 해당 증명자료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통
반환 통장사본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적금통장은 불가)	1통

□ 기타 서류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4 서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대학생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생 계 계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 * ** *** *** *** *** *** *** *** ***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청 년 계	청년 (만19세이상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증	만39세이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청약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등
		※ 국민인금 미가입자도 할답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I 숙I ★ I 크 시H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공단
^^	화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약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학교
재청	성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정부24(www.gov.kr) 등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이 가능함.

8. 계약 안내

■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301-7541-7541-81 (예금주) 경기도시공사
- * 계약금은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후 입금 확인증을 계약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성남하대원 행복주택 1층 공동휴게실

[가능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12:00~13:00)과 휴일은 제외]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21-5번지 (전화: 02-6910-7192)
- ㅇ 계약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당일완료]
-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선착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구인등록등 또는 어떤 운전인어등(취소명시 골도그림시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화의서 제축

[예비 당첨자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퇴거,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인 경우 입주함(검증후 확정된 입주자격의 임대조건으로 입주전 계약변경)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함

9.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거나 승계취득한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적용)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기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입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u>አ</u>	녹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별첨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자 동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조합원입주권:다음각목의구분에 따른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해진가격(이하"기존건물평가액"이라한다)과 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 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성 송압수늑(사업수늑)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 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 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 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구분 항목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8 M L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80 2 7 3 5 3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 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독 같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최대 거주기간 6년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20년 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거주기간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 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 에비자의 계약 및 이즈자경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지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발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 등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	비율
오늘기군 오피 미월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갱신계약 시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금액은 관련법령 및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수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 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 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 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 단지 유의<u>사항</u>

- 총 14세대로 구성된 3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모듈러주택(주택유닛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으로 건립되었습니다.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고,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 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입주 후 청소용역 및 관리용역비 등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직원 비상주에 따라 자전거, 자동차 파손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측은 6미터 도로, 북측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동측은 주택과 인접, 남측은 자동차공업사와 인접되어 있어 소음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간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주차차단 시설이 없음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주출입구 옆 필로티 하부에 5대 설치되어있습니다.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옥상(휴게공간) 및 지상 1층 공용공간(공동세탁실, 휴게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 여야 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필로티 하부에 차폐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고 주출입구에 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1층 2세대로 현관 및 욕실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대 확장형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코니가 없습니다.
- 세대 가스레인지 하부장에 소형세탁기가 설치됩니다.
- 벽걸이 에어컨이 제공됨에 따라 개별 에어컨 설치 불가합니다.
- 거실 창호는 일부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신발장 가운데 통신단자함이 설치되어 실제 사용공간은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맞은편 벽에는 세대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와 돌출입면 사이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등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와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 분배 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창호,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합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요금은 실별 입주자가 개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 1층의 세탁 및 입주자공동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세탁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용 시 옆, 위층세대 입주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세탁실, 휴게실 등)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등은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피트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녹지대에 조성한 수목 및 잔디를 훼손하여 개별 세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식재공간으로 쓰레기 투척 및 이삿짐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옥상정원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공용부위 일부 전력 사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 단지 북측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의 나뭇가지, 낙엽, 과실 등으로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2. 경기행복주택 현장 접수처 안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성남하대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번지 (02-6910-7192)

2020. 07.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임대주택 위탁(재위탁) 사업자(이하 경기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 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 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

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 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주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성 명			생년월일				
신 인	주 소							
		무주택서	대구성원 보유 자산이	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이키ㅂㅈ그	예 🗆		원	[임차인]			
	임차보증금	아니오 🗆		원	[임차인]			
		예 🗆		원	[수분양자]			
기타	분양권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자산		예 □		원	[주주(보유자)]			
	비상장주식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예 D		원	[출자자]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예 □		원	[임대인]			
부채	임대보증금	아니오 🗆		원	[임대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 혀			기 신고 사실		
O 1	허위로 확인도	l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의	E 감수할 것을 ^및	확인합니다.			
-	<u>·</u> 별 보유에 띠 이차ㅂ즈그		^둘 서류 당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시	·보 <i>(</i> 화저인자가 I	기디어야 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	 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지			이 포함된		
다.			총 납부한 금액) 당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시	·본(확정일자가 표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mark>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mark> (예비신혼부부는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청인 : (인)								
	2020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서

1. 신청대상 및 접수번호

공급대상	공급 공급 유형 입주자		급호수	신청대상 선택		접수번호 표시			시
<u>0 4 4 6</u>	유형	입주자	예비자	입주자	예비자	입	두자	예비	비자
대학생	18	1	2			[]	[]
청년계층(소득有)	18	-	1			[]	[]
청년계층(소득無)	18	-				[]	[]
고령자	18	-	1			[]	[]

2.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공급대상 세부 선택

대학생	청년	고령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 사회초년생 □	고령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경기 행복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붙임: 입주자격 심사/조사용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 접수대장

NO	사업	지구명	공급대상	공급 유형	입주자 구분	신청자 성 명	서명	호출응답 체크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답□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답□
					예비자 🗆			불응답
					입주자 🗆			응답□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답□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감날인)

2020. .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 담당자 확인사항

-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 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확인해야함.
-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 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0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 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대학생用]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ㅇ 주민등록번호:

○ 대 학 명: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각서인: (인)

각 서

계 약 대 상 : [경기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서명)

※ 붙임: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